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9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김도읍・구자근・강승규

김희정 • 조지연 • 이성권

주진우 · 김석기 · 윤재옥

윤한홍 · 김기현 · 서지영

의원(12인)

제안이유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에 따른 비용 증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등 물류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 이에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비용 절감을 위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운영 중에 있음.

하지만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어 온라인 도매거
래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물류의 효

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하 "시장운영자"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 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 하여금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부류(部類) 별로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를 인가하되,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인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8조 및 제9조).
- 마.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가 하는 도매는 직접 판매하 거나, 출하자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도록 하고, 농수산 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함(안 제12조).

- 바.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 자에게 플랫폼 사용 수수료, 위탁수수료, 정산수수료 이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 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 17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거 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부터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운영자·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운영자에 대해 업무규정의변경,업무처리의 개선 등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및제24조).
-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가 인가요건 위반 등에 해당할 경우 업무의 정지 또는 취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및 제26조).

법률 제 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 목에 따른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주재료로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2.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과 그 수산물을 주재료로 가공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 것을 말한다.
- 3.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이란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양곡류·청과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어류·패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 4.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이란 제6조에 따라 농수산물온라인도

매시장에서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 가 농수산물 거래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 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수단 및 시스템을 말한다.

- 5.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 산물을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자로 제8조에 따라 인가받은 자를 말한다.
- 6.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 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로부터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자로 제9조에 따라 인가받은 자를 말한다.
- 7. "경매사"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제10조에 따라 임명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시장의 개설 및 유통주체

제4조(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 2. 온라인도매시장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 4.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물류 효율성 개선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이 법에 따라 개설한 온라인도매시장이 아니면 농수산물온라인 도매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5조(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하 "시장운영자"라 한다)은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할 경우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온라인거래플랫폼의 구축 ·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

운영자로 하여금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이하 "온라인거래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온라인거래플랫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시스템
- 2. 온라인도매시장 내 상품거래를 위한 전산시스템
- 3. 대금정산 및 여신관리 시스템
- 4. 배송정보 연계 시스템
- 5. 고객지원 시스템
-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시장운영자는 온라인거 래플랫폼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 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온라인도매시 장의 운영과 농수산물의 안전성 및 수급에 관한 업무를 위한 것으 로 한정한다.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 3.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 ④ 시장운영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 조에 따른 관리사무소나 관리공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를 위 하여 온라인거래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거래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온라인도매시장의 업무규정) ① 시장운영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의 관리, 거래 참여자의 규모·선정·등록 방법, 거래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운영자는 제1항의 업무규정을 마련(변경 및 폐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즉시 업무규정을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 ①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이하 "온라인도매판매자"라 한다)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수산물 부류 (部類)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받아 야 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 자단체로서 생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법인 또는 「수산 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서 생산지 에서 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 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 4. 임원 중 제25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시장운영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 ③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주주 및 임직원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해당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제9조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해당 임원이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로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가유효기간은 그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본다.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운영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와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및 생산자관련 단체
-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도매인
- ⑥ 제1항 후단에 따른 인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온라인 도매판매자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 ①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이하 "온라인도매구매자"라 한다)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인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인이 아닌 온라인도매구매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인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3. 제25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가 취소(제9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 4.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와 경합되는 온라인도매구매자를 하려는 자
 -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6.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 7.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시장운 영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 ③ 법인인 온라인도매구매자는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로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가 유효기간은 그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본다.
- ⑤ 온라인도매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다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 2.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인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절차와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 한다.
- 제10조(경매사의 임면) 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 ② 경매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온라인도매구매자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직원
- 5. 제25조제3항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③ 온라인도매판매자는 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 ④ 온라인도매판매자는 경매사를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장 운영자에게 신고하고,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

다.

- 제11조(경매사의 업무 등)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 2.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 3.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 4.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
 - ②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시장의 운영

- 제12조(도매의 방식 및 매매방법) 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 판매자가 하는 도매의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
 - 2.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하는 방식
 - 3.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방식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온라인도 매판매자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

- 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 ④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온라인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 또는 온라인거래플랫폼 상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3조(온라인도매판매자의 공시) ①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① 온라인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표준규격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여 표시할 수있다.
 - ② 온라인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및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 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 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출하자에 대해 표준규격 및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매매 농수산물의 인수의무) 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 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 간 거래가 체결될 경우 온라인도매판매 자는 온라인도매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농수산물을 배송하여야 한 다. 다만,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 간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을 따른다.
 - ② 온라인도매구매자는 제1항에 따라 배송된 농수산물을 확인한 즉

- 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을 경우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입력하고 구매를 확정하여야 한다.
- 제16조(농수산물의 대금결제) ①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도매한 농수산물을 온라인도매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하였을 때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 ②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운영자가 업무규정에서 정한다.
- 제17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시장운영자가 온라인도매판매자로부터 온라인거래플랫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온라인거래플랫폼의사용료
 - 2. 온라인도매판매자가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 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 3. 온라인도매구매자가 거래대금을 정산하고자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시장운영자에게 납부하는 정산수 수료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온라인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운영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2.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 3.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온라인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 5.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6.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장운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 제1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운영자 소속으로 온라인도매시장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 4. 그 밖에 시장운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운영자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互選)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除斥)·기피·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21조(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 인도매구매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 제22조(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운영 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 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운영자는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하여금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 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라인도매구매자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

- 로 하여금 시장운영자·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운영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가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24조(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 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운 영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5조(업무의 정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온라인도매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온라인도매판 매자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인가요건을 위반하였을 때

-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 하였을 때
- 3. 제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 4.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 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온라 인도매판매자가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였을 때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가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하 였을 때
-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 9.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온라인도매구매자에게 판매를 하였을 때
- 10. 제13조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 1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 12.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 1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14. 제23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 를 방해하였을 때
- 15.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16. 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을 위반하였을 때
-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구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인가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 하였을 때
-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 4. 제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 참하였을 때

- 5. 제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인가증을 빌려 주었을 때
-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7. 제23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 8.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 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경매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하여금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할 수 있다.
- 1.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잘못 결정한 경우
- 2.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 못한 경우
- 3.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매수인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 4. 정가ㆍ수의매매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축산식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온라인도매판매자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26조(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 도매판매자가 제25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온라인도매구매자가 제25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온라인도매판매자에게는 1억원 이하, 온라인도매구매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 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 제2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취소
 -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취소
-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 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 유효기간이 지 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재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라인도매

판매자의 업무를 한 자

- 2.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 유효기간이 지 난 후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한 자
- 3.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무 를 계속한 자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온라인도매구매자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 2. 제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인가증을 빌려준 자
 - 3.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자
 -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위탁받거나 거짓으로 매수하여 거래한 자(제8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온라인도매구매자에게 판매한 온라인도매판매자(제8조제5항제3호의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한정한다)

-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및 제3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자
 -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4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온라인도매

판매자가 임명한 경매사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